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조선인 ‘위안부’ 정책의 역사적 특수성*

강 경 자**

keiko84@hanmail.net

〈 目 次 〉

- | | |
|--------------------------|---------------------------|
| 1. 들어가기 | 3. 조선인 ‘위안부’ 정책의 특수성 |
| 2.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식민지 조선의 여성 | 3.1 조선인 ‘위안부’ 정책과 동원의 특수성 |
| 2.1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식민지 조선 | 3.2 위안소 시스템의 특수성 |
| 2.2 조선 여성의 위상과 역할 | 4. 나가기 |

Key word : 천황제 이데올로기(The emperor's ideology), 조선인 ‘위안부’(Korean ‘comfort women’), 강제동원(forced mobilization), 역사 전쟁(Historical War)

1. 들어가기

이 연구는 조선인 ‘위안부’ 정책의 특수성을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와의 유기적 관계성에서 고찰하고, 조선인 ‘위안부’ 강제동원을 비롯한 피해실태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시도하는 연구이다. 조선인 ‘위안부’ 정책의 특수성과 그 피해실태를 역사적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과 인권유린의 역사가 끊임없는 역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심각한 역사 왜곡의 소재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를 필두로 하는 일본 우익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5523)

**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일본학

연구자들의 논지는 일본군 ‘위안부’들은 상당한 고수익을 올리던 ‘자발적 매춘부’들이었으며, 공권력에 의한 강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버드의 미쓰비시 교수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역시 그의 논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들은 위안소의 매춘업자와 매춘부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자발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¹⁾ 이와 같은 주장은 국내 극우단체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다.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가 주관한 ‘위안부 문제 한일 합동 심포지움(2023)’에서는 니시오카를 비롯한 일본 연구자들과 마크 램지어, 이영훈, 류석춘, 이우연, 김병현 등이 참석하여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된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였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날조된 역사”라고 비판했다. 김병현은 “유독 조선인 ‘위안부’만 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못하다”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²⁾

이처럼 조선인 ‘위안부’ 정책과 동원을 둘러싼 역사 전쟁은 한일간 역사 인식의 대립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적으로도 이념적 사회갈등과 분열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끊임없는 역사 논쟁 속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념적 편향성의 문제로 치환되어 버렸다.

따라서 조선인 ‘위안부’의 문제를 이념이 아닌 역사문제로 그 본질적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조선인 ‘위안부’를 둘러싼 제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가 발생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조선인 ‘위안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구축된 제국 일본이 지배하던 식민 조선 사회를 재현하고,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선인 ‘위안부’ 제도와 정책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 우선 일본제국과 식민 조선의 통치 이념과 구체적 정책 수립의 초석이 되었던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구축된 근대 일본제국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를 통해 어떠한 전략과 정책으로 조선을 지배했는지, 조선총독부의 관련 법령과 교육정책 및 내무성, 외무성, 후생성의 자료를 통해 일본제국의 조선을

1) J. Mark Ramseyer(2021)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ume 65, p.5

2) 김병현(2021) 30년간의 위안부 왜곡, 빨간 수요일 미래사 p.57

향한 전략과 정책 및 식민 조선의 사회와 조선 여성의 위상과 역할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또한 조선인 ‘위안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 특별히 조선인 ‘위안부’ 동원 과정과 위안소 시스템의 특수성을 천황제 이데올로기와의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재고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인 ‘위안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지휘 명령체계를 엿볼 수 있는 육·해군성 통첩 및 조선총독부의 자료,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자료들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사료에 기초하여 조선인 ‘위안부’에게 일어났던 강제동원, 억압과 차별 및 위안소에서의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간 국내외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연구는 전시 성폭력, 여성 인권, 제국주의, 식민주의, 민족, 젠더 등 여러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의 국제법적 연구, 식민주의, 민족, 젠더 등의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학적, 역사적 연구, 공문서 및 전범재판 자료 및 국내외 위안부 소송자료 등의 실증적 자료를 기초로 연구한 법적 연구,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 채록 분석한 피해 실태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위안부’ 문제의 특수성을 본질적으로 규명하고자 할 때,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나타나는 제 문제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민족 차별과 젠더, 인권유린 문제 등 이 총합적으로 수렴하는 지점에 있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 연구는 없다. 미네기시 겐타로(峯岸賢太郎)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위안부’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해 왔으나, 실제로 조선인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통해 규명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식민주의나 제국주의,

3) ‘위안부’ 문제 관련 선행연구는 국내외 우수한 연구자들과 연구기관, UN,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의한 방대한 연구 업적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소개하기에는 지면상의 한계로 생략한다. 위안부 선행연구를 다룬 보고서와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 바람. 라미경(2022) 「일본군 ‘위안부’ 국내연구의 현황 분석과 과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기법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21(1) pp.9-36/ 서현주(2016) 「2006-2016년간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성과와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 pp. 197-222

여성 인권이나 젠더 문제로서만이 아닌, 근대 일본제국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구축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실증적 행정, 정책, 법 자료에 기초하여 조선인 ‘위안부’ 정책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찰하는 첫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식민지 조선의 여성

2.1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식민지 조선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일본의 국가주의는 일반적인 근대 국민국가의 내셔널리즘과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구별되는, 강력하고 노골적인 울트라(ultra)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천황제 이데올로기’에서 찾았다. 천황제 이데올로기 하 근대 일본제국은 거대한 이데올로기 집단을 이루면서, 법과 신앙, 학문, 예술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치 중심에 천황이 있는 천황제 이데올로기 사회를 구축했다.⁴⁾ 따라서 근대 일본제국의 사회와 정치, 식민지 정책을 비롯한 모든 가치 질서 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메이지유신(1868)부터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의 근간이 되었던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그 다양한 성격과 특징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구별되는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성격은 천황의 신격화, 신적 권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 체제의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존왕양이파는 강력한 천황의 절대적 권력과 권위를 확보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근대 일본제국의 제도를 확립하는 메이지 헌법을 통해 신성불가침의 권력을 천황에게 부여하게 된다.⁵⁾

4)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1997)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 현대정치 사상과 행동 p.56-59.

5) 박진우(2015) 「천황제와 일본 군국주의」, 황해문화 89 p.160

메이지 헌법은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기 때문에 침범할 수 없다.”⁶⁾ 고 명시함으로써, 법적으로 천황을 신성시하고 절대 불가침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였다. 메이지 헌법을 바탕으로 신적 권위를 가진 유일한 주권자요, 통치권과 육해군 통수권 모두 장악한 신성 불가침의 천황의 절대 권력이 탄생되었다.⁷⁾

또한 천황은 현인신(現人神)으로서 절대적인 신적 위엄과 권한을 가진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황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 헌신하는 것이 천황의 신민으로서의 책무라는 논리를 정립하여 이를 국민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국민 의식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교육 규범으로 1890년 10월 30일 메이지 천황의 명으로 교육칙어(教育勅語)를 공포하기에 이른다. 교육칙어는 신적 존재인 천황이 교육의 연원이자, 개인, 가족, 사회, 도덕규범의 궁극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유사시에는 천황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신민이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주입하는 교육 규범이었다.⁸⁾

천황의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권력이 확보된 헌법과 천황에 대한 멸사봉공(滅私奉公)으로 모든 가치가 수렴되는 종교적 교의와 같은 교육칙어 위에 일본의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진선미의 극치이자 국제인 천황의 존재를 가공해 냈다. 이렇게 일본의 근대 천황은 법적 정치적 종교적 모든 권력을 가진 신적 존재이자 주권자로서, 국가를 신칙(神勅)으로 다스리는 국체가 되었다.

이러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1930년대 이후에는 군부의 주도 아래 ‘현인신(現人神)’ 천황이 지배하는 신국(神國) 일본에 의한 세계 지배 사명이라는 미명 하 침략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미화하면서 군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했다. 그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 1937년 5월 일본 문부성이 편찬한 국체의 본의⁹⁾이다. 국체의 본의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황조의 신칙(神勅)을

6) 大日本帝國憲法 <https://www.ndl.go.jp/constitution/etc/j02.html>

7) 박진우(2015) 「천황제와 일본 군국주의」 황해문화 89 pp.160-164

8) 이인화(2023) 「근대 일본 국민도덕으로서의 교육칙어의 의미와 현재 일본에서의 교재 사용 논의 칙어연의 및 일본 학계의 성명문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69 pp.99-100

9) 山田孝雄(1937) 國體の本義 寶文館 <https://dl.ndl.go.jp/pid/1233161/1/7>

국체의 본의는 서문에서 “본서는 국체를 명징(明)하게 하고, 국민정신을 함양·진작해야 할 각하의 급무를 감안하여 편찬했다.”하고 있는데, 이는 국체가 무엇인지 천황의 존재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며, 이는 전시체제하 천황을 위한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 편찬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받들어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 만고불역의 국체이다.” “천황은 황조 황종의 마음을 그대로 체현하여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신이시다.” “이 대의를 기반으로 일대 가족국가로서 역조가 일심으로 성지(聖旨)를 받들고 명심하여, 능히 충효의 미덕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신칙을 받들어 통치하시는 천황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신민의 무조건적 충성과 멸사봉공을 강조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전시기 일본 국민을 침략전쟁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하였다.

일본제국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조선의 식민정책에서도 핵심적 근간이 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국병합조약’을 통해 한국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천황’에게 양도하게 한 일본제국은 이듬해 “조선의 교육은 교육칙어의 취지에 기초해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는 ‘조선교육령’을 공포한다.¹⁰⁾ 1911년 8월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은 조선판 교육칙어로서 일본어의 보급과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주입에 역점을 둔 것이었다.¹¹⁾

일본제국의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1930년대 군국주의 성격을 강화해 나가듯이 전시체제가 일제의 조선 지배 정책의 핵심은 “국체의 본의를 구현”하여 천황을 위해 물자는 물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1936년 8월 제7대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조선 통치의 최고 목표를 조선인이 황국신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천황을 보좌하고 황도(皇道)를 선양하는 것으로 삼고, 조선총독부의 모든 정책과 교육방침을 이 목표에 맞추도록 지시했다.¹²⁾ 이는 당시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와 이후 공포된 각의결정, 법령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통치의 목표는 ‘국체의 본의를 구현’이며 이는 만세일계의 천황을 살아 있는 신으로 받드는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라는 시정방침을 발표하고 내선일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했다.¹³⁾ 이와같은 시정방침과 함께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조선에서는 사상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국민정신총동원실시요강(1937.

10)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기초해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11) 박진우(2007) 『천황제이데올로기와 식민지조선 1910~20년대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6 p.203

12) 朝鮮總督府官房文書科 編纂(1941) 諭告·訓示·演述總攬 p.160

13) 朝鮮總督府(1941) 『極秘 鮮一體ノ理念及其ノ具現方策要綱』, 大野文書 p.2

8.24.)」 「국민정신총동원실시에 관한 내각훈령(1937.9.9.)」 「국민정신총동원실시에 관한 내각고유(1937.9.9.)」 등이 잇달아 공포되었다.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요강이나 내각 훈령, 고유의 내용은 한결같이 “존엄하신 국체를 따라 진중보국의 정신을 드높이고. 황운을 받들고 봉사해야 한다.” “거국일치,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협화일심하여 황운을 받들어..”와 같은 표현으로 천황을 받들어 멸사봉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요지로 관철되어 있다.¹⁴⁾

이에 더 나아가 각의결정 「국책대강(國策大綱)(1938.1.20.)」에서는 ‘국체의 본의의 구현’에 근거하여 모든 정책을 수행할 것과 국민사상의 지도를 철저히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¹⁵⁾ 국책의 방침대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위한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 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통첩(1938.4.9.)」과 「국민정신총동원실시기본방침(1938.4.28.)」 「국민정신총동원강화방책(1939.2.9.)」 「국민정신총동원신진개시기본방침(1939.4.11.)」 「전시국민사상 확립에 관한 기본 방책요강(1943.12.10.)」과 같은 각의결정이 잇달아 공포, 시행되었다.¹⁶⁾ 각 각의 결정에서 침략전쟁에 대한 표현은 “제국의 변함없는 대방침인 성전(聖戰)”(통첩(1938.4.9.)),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이상(실시기본방침(1938.4.28.)), “동아시아의 신질서 건설 (기본방침(1939.4.11.))” “대동아 건설의 중책(기본 방책요강(1943.12.10.))” 처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공통적인 내용은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여 국가의 모든 시책을 충성스럽게 달성할 것과 이를 위해 사상 지도를 강화하여 황국신민이라는 의식을 철저히 갖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국체사상 교육은 1938년 5월 3일 조선에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을 필두로 하는 총동원법 관련 파생 법령들을 잇달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발맞추어 표리일체로 진행되었다.¹⁷⁾ 일본제국은 ‘국가총동원법’을 필두로 총동원 체제하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자유롭게 통제 운용, 동원하기 위해서 총동원 관련 법안을 수립, 시행해 나갔으며, 이에 따라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원활하게 동원, 수탈하기 위한 조선인의 사상통제는 더욱 철저하게 강화되

14) 오일환 외 편저(2022) 전시동원 기구와 제도 1 총동원체제 관련 주요 법령 및 각의 결정 등 동북아역사재단 pp.270-280

15) 상계서, 각의결정 국책대강(國策大綱) p.137

16) 상계서, pp.281-298

17) 상계서, 「총동원체제에 관한 주요 법령 및 각의 결정 등」 pp.121-157

어 갔다. 그리고 국체 사상교육의 결론은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여 팔굉일우의 대의를 구현하기 위해 “대륙 경영의 병참기지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었다.¹⁸⁾

이렇게 볼 때 일본제국의 황민화정책은 조선인이 일본 천황의 신민임을 철저하게 세뇌시켜 조선을 병참기지화하고, 전시 상황에 대응하여 조선인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처럼 천황제 이데올로기 하 식민 조선은 천황의 성전을 위한 병참기지로, 조선인은 천황의 신민이 되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천황의 뜻을 받들어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자들로 도구화되었다.

2.2 조선 여성의 위상과 역할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정신적 영역과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던 천황제 국가 시스템에서 인간의 사회적 가치 서열은 천황과의 거리에 의해 정해졌다. 천황을 정점으로 한 위계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최상위 위계 집단은 천황의 군대 ‘황군’이었다.²⁰⁾ 황군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솔하시는 군대”로서, 군인칙유에서는 황군은 천황이 “수족처럼 신뢰하는 신하”로서 친밀감이 특별한 존재로 묘사되었다.²¹⁾ 천황제 국가에서 천황의 군대 황군은 국민의 정화(精華)로서 본질적인 가치의 우월을 점할 수 있었다.²²⁾

반면 천황제 이데올로기 사회 속에 여성의 위치는 남성중심적 가부장사회에서 종속적이고 도구화된 존재였다. 천황제 국가를 지탱하는 하부체제인 ‘이예(家)제도’는 호적에 명기한 호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호주의 강력한 가부장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공민권조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과 무시를 법적으로 공인하는 구조를 낳았다.²³⁾ 여성의

18) 朝鮮總督府編(1938.9) 『內鮮一體ノ強化徹底ニ關スル件』

19) 신용하(2020) 일제의 한국민족말살·황국신민화 정책의 진실 문학과학지성사 pp.134

20)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옮김(1997) 『초국가주의의 논의와 심리』 현대정치 사상과 행동 한길사 p.59

21) 『군인칙유(軍人勅諭)』 짐은 너희 군인의 대원수이다. 그럴진대 짐은 너희를 고퍼(股脇)으로 의지하고 너희는 짐을 우두머리(頭首)로 받들어야 할 것이며, 그 친밀함은 특히 깊어야 할 것이다.

22) 마루야마 마사오(1997) 상계서 p.57

위치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하위 계층에 속했던 것이다.²⁴⁾

무엇보다 천황제 사회는 일본인 여성을 두 개의 배타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구분하였다. 여성적 도덕을 함양하는데 힘써야 하는 ‘보통’ 여성들과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제국의 팽창을 위해 불가결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여성들로 구분하는 사고가 팽배했다.²⁵⁾ 남성중심적 규범이 팽배했던 사회 속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여성들은 공익을 위한 자원이자 필요악으로 간주되었다.²⁶⁾ 이러한 인식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본격적인 총동원 체제 전시기에 접어들면서 각 계층의 여성들에 대한 각기 다른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현모양처로 교육받은 보통의 여성들이나 엘리트 계층의 여성들은 ‘군국의 어머니’, ‘총후부인’으로써의 역할이 요구되었고 이들에 속하지 못한 하층민 여성들은 생산력 강화를 위해 정신대로 나가거나 황군들을 위한 ‘위안부’로써 희생하는 역할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은 내지와 외지, 일본인과 조선인 여성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일본 여성은 부덕을 갖춘 모범적인 어머니로 제시되고 조선의 여성은 폄하되고 무지한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²⁷⁾ 일본인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현모와 후방을 지키는 ‘총후부인’으로써의 역할이 강조되고, 조선인 여성에게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과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역할이 강요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여성과 일본의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정반대였다고 할 수 있다.²⁸⁾

이는 당시 일본 여성과 조선인 여성에게 적용되었던 교육과 역할, 법적 제도 등을 통해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전시기 일본의 일반 여성들에게는 일본제국이 바라는 ‘국가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군국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23) 임경택(2005) 『일본가족의 근대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형성과 가족』 일본사상 9 p.131

24) 유지이(2019) 『일본 메이지기 천황제이데올로기와 여성』 한일관계사연구 63 p.263-293

25) 권숙인(2014)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화류계 여성 한 게이샤 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본 주변부 여성 식민자』 사회와역사 103 pp.153-192

26) 권숙인(2018) 『식민지 여자·제국의 주부·군국의 어머니』 일본비평 18 p.252

27) 안태운(2003) 『일제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 한국여성학 19(3) p.108

28) 장미희(2007)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여성동원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p.179

이 강조되었다.²⁹⁾ 이는 문부성 통첩으로 각 지방 장관을 통해 배포된 교육지침서 전시기정교육지침요항 이른바 ‘어머니의 전진훈(母の戰陣訓)’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지침서는 가정은 천황에게 충성 봉사하는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곳이며, 대동아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일본 가정의 역할이자, 사명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다.³⁰⁾

법적으로도 일본의 여성은 ‘모자보호법’과 같은 법을 통해 보호받았다. 1938년 시행된 ‘모자보호법’은 가계를 유지하고 처자를 부양할 남편이 없는 경우, 혹은 남편이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국가의 장래를 담당하는 자인 모친과 아동의 건전한 발육을 위해 모자를 일체로 보호하는 법안이었다.³¹⁾ 모친의 노동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여성과 아이의 양육에 방점을 두고 시행된 구호특별법이었다.³²⁾ 이와 같은 특별법은 일본제국이 일본 여성들을 대동아전쟁의 목적을 완수해 낼 자녀들을 양육하는, 국가의 미래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법적 제도장치를 통해 보호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조선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에 있어서 확연한 차별은 전시기 여성동원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여성 노무동원과 관련 있는 법제는 「국가총동원법(1938)」, 「여자광부갱내취업허가제(1941)」, 「국민근로보국협력령(1941)」, 「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요강(1943)」, 「여자정신근로령(1944)」 등이다.³³⁾ 이러한 법제들이 새롭게 제정되고 시행될 때마다 조선 여성의 노무동원은 점차 확대 강화되었다.

1941년에 시행된 「여자광부갱내취업허가제」는 여성도 갱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한 부령으로서, 16세 이상의 조선 여성들은 광산에서의 갱내의 작업 군사상 필요한 토목건축 사업까지 수행해야 했다. 16세 이상의 여성은

29) 박유미(2013) 「‘군국의 어머니’ 담론 연구」, 일본문화연구 45 pp.153-172

30) 文部省社会教育局(1942) 戦時家庭教育指導要項 家庭教育指導叢書 第1輯

31) 内務省社会局社会部編(1937) 母子保護法等の説明

内務大臣官房文(1937) 「母子保護法案に就て」, 内務時報 2卷1号

32) 堀川祐里(2019) 「戦時期における救貧対策としての母子保護法 子どもの育成に対する期待と稼働労働に対する期待の二重性を中心に」, 経済学論纂 59 p.341

33)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2021)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동북아역사재단 p.465

임신한 자와 산후 3주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기혼자, 미혼자 구별 없이 여성 노동력이 주로 남성들이 동원되었던 광산, 토목공사 현장에 동원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여성들을 “광업전사”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전사”라고 선전하며 적극적으로 광산 등으로 동원하였다.³⁴⁾ 또한 1943년 『생신증강 노무강화대책요강』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부인 동원을 강화”하는 것이었다.³⁵⁾ 이 요강을 통해 조선의 여성은 보조적인 수단이 아닌 적극적인 생산 주체가 될 것을 요구받았다.³⁶⁾

이처럼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되었던 조선의 여성 노무동원의 법제들은 전시기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여성의 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법령이 새롭게 시행될 때마다 여성의 노무동원 최소 연령도 20세 16세 14세 12세로 점차 낮아지면서 대상의 연령과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반면, 일본 여성의 경우 노무동원에 관한 논의가 진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1943년 3월 10일 중의원 전시행정특별법안위원회에서 고이즈미 치카히코(小泉親彦) 후생성 장관은 일본 여성의 노무동원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여자의 동원은 일본 부인의 가정에서의 지위,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여성에게는 일본 부인으로서 가정에서의 지위, 모성으로서의 중대한 사명 황국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 수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³⁷⁾

1944년 8월에 공포된 『여자정신근로령』도 일본은 미혼 여성 12세에서 40세가 그 대상이지만, 가정을 가진 여성은 제외가 되었다. 또한 일본 여성이 고된

34) 김미정(2019) 『일제강점기 조선여성에 대한 노동력 동원 양상 : 1937~1945년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2(3) p.35

35)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2021) 상계서 p.468

36) 김미정(2019) 상계서 p.19

37) 1943년 3월 10일 중의원 전시행정특별법안위원회에서 고이즈미 후생성 장관은 “결전(決戰)하에서의 여자의 근로동원은, ‘생산력의 증강’과 ‘민족력의 강화’라는 두 가지의 곤란한, 지극히 중대한 의의를 띄고 있다. 만약 여자 근로자의 모성을 파괴한다면, 근로력을 고갈시킨다거나 모성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의 수행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결과는 바로 내일의 일본의 민족력, 일본의 전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전쟁으로 인해 여성이 근로 직장에 나가도 장래의 “모(母)”로서의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건강과 인격을 근로생활 안에 배양시키도록 근로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노동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전시기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수 전시 노무관리가 행해졌다.

이같은 일제의 조선과 일본의 여성 노무동원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1941년 시행된 「국민우생법」과 「인구증가정책」을 통해 그 의도와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국민우생법」은 국체와 일본 민족의 영원한 융성을 위해, 일본인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³⁸⁾ 일본의 우생학은 당시 1억인 일본인을 2-3배로 증가시키되, 우수한 자질의 사람 2-3억은 있어야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³⁹⁾

또한 일제는 인구증산을 목표로 1941년 1월 22일 「인구정책확립요강」을 각의 결정했다.⁴⁰⁾ 요강에서는 황국의 사명 달성을 위해 일본인 인구의 양적 질적 비약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책을 소개하고 있다.⁴¹⁾ 이와 같은 인식은 동년에 시행된 「국민우생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일본 민족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일본인을 많이 낳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통치시책 기획안을 보면 “조선 민족을 일본 민족화하기 위해서는 조선 민족의 수는 가급적 소수인 것이 적당하다”. “조선인 증가억제 등의 방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⁴²⁾

또한 「인구정책확립요강」에서는 인구 증가의 방책으로 모성의 국가적 사명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모성 육성에 노력할 것과 20세 이상의 여성은 결혼을 위해 취업을 가능한 억제하는 방침을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결혼 유무 상관없이 기혼여성도 노무동원 현장으로 강제동원한데 반해, 일본의 여성은 황국의 번영과 동아공영권 건설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산아보국(産

38) <大藏省印刷局國民優生法> <https://dl.ndl.go.jp/info:ndljp/pid/2960490/2>

39) 강태웅(2013) 「우생학과 일본인의 표상 1920-40년대 일본 우생학의 전개와 특성」, 일본학연구 38 p.38

40) 「人口政策確立要綱ニ関スル件」 <https://www.digital.archives.go.jp/img/pdf/632364>
「人口政策確立要綱」 14144606.pdf (ipss.go.jp)

41) 「人口政策確立要綱」 제1취차: 동아공영권을 건설해서 그 유구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황국의 사명이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확립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하고 영속적인 발전 증식과 그 자원의 비약적인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동아에서의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배치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긴요한 급무이다.

42) 水野直樹 編(1998) 戰時期 植民地統治資料 第7卷 柏書房 pp.178-180

兒報國)의 사명을 가진 국가적 소중한 존재로 보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일본제국의 식민지 조선의 여성은 사회적으로나 법제적으로 차별과 배제 속에 사회의 가장 무시받는 하층 위계에 속한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인식적 차별은 조선의 여성을 전시기 일본제국과 천황을 위해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소비되게 하였다. 특별히 일본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던 일부 여성들을 제외한 일본의 총후부인, 군국의 어머니들에게 맡길 수 없었던 황군을 위한 ‘위안부’ 역할은 조선의 여성에게 강요되었다.

3. 조선인 ‘위안부’ 정책의 특수성

3.1 조선인 ‘위안부’ 정책과 동원의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 정책과 제도는 상술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특성과 역사적 특수성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조선 지배 핵심은 오로지 천황을 위해 살고 죽는 황민화정책과 물질 인적 자원을 천황의 침략전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화, 병참기지화에 있었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여성은 천황제 국가 최하위 위계에 속한 자들로서 천황의 침략전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가장 적합한 계층이었다.

무엇보다 조선인 ‘위안부’ 정책은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볼 때, 1936년 부임한 미나미 총독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황민화, 민족말살정책과 함께 조선의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선의 여성들을 도구로 활용한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조선의 여성을 강제 동원하여 황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안부’로 대거 동원하는 정책은 조선 민족의 정체성을 짓밟고 쇠퇴시키는데 매우 유효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⁴³⁾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성을 이용하는 전략, 성을 통한 여성 통제와 지배는 식민지화 과정에서 악용되어 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이 논의를 위해서는 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조선인 ‘위안

43) 金一勉 (1976)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三一書房 pp.8-9

부' 정책이 일본인 '위안부' 정책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특수하게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이는 일본인 '위안부' 모집이나 동원 행태와는 확연히 다른 조선인 '위안부' 동원 정책의 운용 및 동원 행태에 따른 피해실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 '위안부' 정책은 일본 내무성과 외무성, 육해군성, 조선총독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본격적으로 가동된 국가정책이었다.⁴⁵⁾ 일본군은 일본 내무성·외무성과 조선총독부를 통해 군 '위안부' 동원을 요구하였고, 조선총독부는 지방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의 연계 속에 조직적으로 조선인 '위안부' 모집과 동원, 수송 및 관리를 엄격하고 철저히 수행했다.⁴⁶⁾ 조선총독부는 동원과 관련된 행정 기구를 갖추고 관과 경찰, 관변단체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동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인 '위안부'의 모집, 동원에는 지방의 읍, 면 단위까지 포진되어 있던 동원 업무 담당 직원이 관헌, 경찰들과의 협조하에 동원 업무를 수행했다. 구장, 순사, 면장 등 말단 행정 기관은 각 가구에 자녀가 몇 명인지, 성별, 연령, 직업, 마을 공동체의 특성 등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동원했던 것이다.⁴⁷⁾

조선인 '위안부' 정책이 군부 및 총독부의 연계 속에서 조선총독부의 법령, 감시, 통제, 지시 하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강제동원 정책이었다는 것은, 조선인 '위안부' 문제가 일본인 '위안부' 정책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혜인은 <직업소개령>(1940년)과 그 시행규칙을 통해 '위안부' 모집에는 조선총독부, 도지사, 경찰이 행정적 절차와 모집 절차 속에 모두 관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⁴⁸⁾

44) Nira Yuval-Davis(1993) "Gender and N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6, No 4, pp.621-632

45) 강정숙(2018) 「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性 究 96 p.57

46) 1938.3.4. 육군성부관통첩 <軍慰安所從業婦等募集二關スル件>

<https://www.archive814.or.kr/record/recordDetailView.do?recordId=197>

일본육군성에서 북지방면군(北支方面軍) 및 중지파견군(中支派遣軍)의 참모장 앞으로 보낸 통첩.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 파견군이 통제하고 업자 선정을 주도면밀하게 하고 모집 지역의 헌병 및 경찰과 긴밀하게 연계를 가지고 행하라고 주문하고 있음.

47)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 (2021) 「여성과 아동 동원」, 일제의 전시 조인 노동력 동원 동북아역사재단 pp.474-476/ 김경일 외(2017) 동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연구 한국학 중앙연구원출판부 p.223

48) 한혜인(2013) 「총동원체제하 직업소개령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제국 일본과 식민지

이는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을 ‘위안부’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였냐는 질문에 대해 모집업자, 군인 군속, 순사, 일본인 모집업자, 이장이나 구장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모집되었다고 한다. 이들 답변의 비율을 보면 군인 군속과 순사, 이장, 구장과 같은 군, 행정직원에 의해 모집된 자들의 비율이 과반을 넘는다.⁴⁹⁾ 한국인 모집업자, 일본순사, 일본 군인의 연결 고리 모집과 헌병, 군인에 의한 호송은 피해자들의 증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⁰⁾ 조선인 ‘위안부’ 모집은 조선총독부, 경성의 육군사령부, 도지사, 경찰이 행정적 절차와 모집 절차 속에 모두 관여되어 있었다.⁵¹⁾ 이는 조선인 ‘위안부’ 동원 정책은 일제의 노무동원이나 징집 시스템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강제성을 수반한 체계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강제동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인 ‘위안부’ 정책은 모집 대상과 동원 형태에 있어 일본인 ‘위안부’ 모집 양상과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는 제국의 위신과 황군의 명예, 출정 병사들의 유가족들을 고려하여 일본인 여성 중 ‘위안부’로 동원할 여성은 “일본에서 창기 또는 기타 사실상 매춘업을 하고 있는 만 21세 이상의 성병이 없는 여성”으로 제한했다. 또한 부녀매매나 약취, 유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단속하였다.⁵²⁾ 당시 일본 사회에서 매춘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은 성적 서비스를 위한 사회악과 같은 불결한 존재였다. 일본 사회에서 정상적인 여성들로 인식되지 못했던 21세 이상의 매춘업 종사자 여성들을 제외하고 일반 일본인 여성이 ‘위안부’로 종사할 우려나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일본의 일반 여성들은 노무동원에서도 특별 전시관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동원 대상에서는 완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조선의 경우 「부녀매매에 관한 국제조약」 적용에서 배제하여 조선의 미성년 일반 여성을 사기, 협박, 인신매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조선의 차별적 제도운영을 중심으로 』 사림 46 pp.371-413

49) 김경일 외(2017) 동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66

5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2014-2018)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3 한울

51) 미네기시 겐타로, 박옥순 역(2001) 천황의 군대와 성노예 당대 pp.136-137

52) 호사카유지(2018) 「내무성정보국장. 지나도항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 1 황금알 p.89

조선인 ‘위안부’ 여성의 62%가 취업 사기로 동원되었으며, 협박 및 폭력, 인신 매매, 유괴, 납치, 공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되었다. 또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연령은 어린 미혼의 미성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나이는 16세(21.5%)가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11세(3.8%)의 어린아이도 동원되었다. 위안소에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의 86.5%에 달하는 이들이 어린 미성년자였다.⁵³⁾ 세계 각지의 위안소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도 조선인 위안부였다. 중국 금화지역 위안소에는 조선인 여성이 67.6%를 차지했는데⁵⁴⁾ 대부분의 일본군 위안소에는 조선인 여성들이 80% 가량 있을 만큼, 조선인 ‘위안부’가 압도적으로 많이 동원되었다.⁵⁵⁾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일본의 중의원 법무위원회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본사회당 의원 아카마쓰 이사무(赤松勇)는 1973년 6월 27일 제71회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조선의 여인들을 납치, 강제연행하여 ‘위안부’로 삼은 문제를 인권유린, 침략행위로 규탄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에서 지나가던 아이를 납치하여 훗카이도로 데려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조선의 부녀자 200명을 납치하여 훗카이도로 끌고 가 강제적으로 위안부, 즉 매춘부로 유곽에 가두고서 이들을 학대했다는 사실**, 이는 인권유린, 외교적으로 말하면 침략행위입니다.⁵⁶⁾

또한 1988년 4월 25일 제112회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공명당의원 구사카와 쇼조(草川昭三)는 일본의 군대가 조선의 여성들을 군대 위안부로 징용하였다고 발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 ‘위안부’는 군에 의해

53)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 편, 김경원의 역(2014)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강제연행, 고노 담화, 국민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p.54/ 김경일 외(2017) 동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134-137

54) 소지량·진려비(2018) 『중국 금화 지역의 일본군 위안소와 조선인 위안부: 華鷄林會會則及名簿 분석』 한국학연구 제49집 p.491

55) 金一勉(1976) 상계서 p.18

56)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엮음(2022) 일본 국회의회의록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1948-199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p.53

강제징용 혹은 강제동원 당했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전전(戰前) 일본의 군대가 강제적으로 당시 조선반도의 여성들을 일본 군대의 위안부로 징용했고,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런 분들은 반미치광이가 되어 대부분이 자해하는 등 비참한 역사적 상처가 있었다는 말들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⁵⁷⁾

상기 일본 국회 회의록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인 ‘위안부’ 정책은 일본제국이 강제적으로 조선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인 ‘위안부’ 정책은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전시기 강화된 황민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 속에서 조선의 여성은 대동아전쟁을 위해 황군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도구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과 조선인 여성과 일본인 여성 사이에 있던 민족적 차별, 법과 제도의 차별 속에 이루어진 강제동원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3.2 위안소 시스템의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유례없이 가혹한 위안소의 특수한 시스템을 가지는 것도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무관치 않다. 위안소는 일본군의 조직 체계와 작전에 결부된 군사시설이자 전쟁 수행을 위해 기획된 일본군의 공식적 제도이자 시스템이었다.⁵⁸⁾ 위안소 설치에는 군, 외무성, 내무성, 경찰이 협력했다.⁵⁹⁾ 일본 위안소의 시스템은 한마디로 “성노예 강간소” 혹은 “강간센터”라고 규정할 만큼, 세계 우수의 일반 전시 성폭행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유례없이 가혹한 비인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⁶⁰⁾ 이러한 위안소 시스템에는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투영되어 나타난다.

첫째로, 위안소의 성노예 강간소 시스템은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낳은 일본

57)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엮음(2022) 상계서 p.66

58) 하종문(2023) 진중일지로 본 일본군 위안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다 휴머니스트 p.9

59) 미네기시 겐타로, 박옥순 역(2001) 천황의 군대와 성노예 당대 pp.207-208

60) Gay J. McDougall(1998)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Final report submitted by Special Rapporteur
<https://www.archive814.or.kr/record/recordDetailView.do?recordId=852>

민족 우월주의와 배타주의, 타민족 혐오와 무시를 투영하고 있다.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만세일계 천황이 다스리는 신국 일본은 우수한 국가, 일본 민족은 우월한 민족이라는 일본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가지게 했다. 천황에 대한 광적인 충성과 애국주의가 강조될수록 천황의 현손인 지배 민족 일본에 대한 애국주의와 함께 일본 민족 외 타자에 대한 혐오와 경멸, 배타성은 강화되었다. 위안소의 성노예 강간 시스템은 민족적인 우월감과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 경멸을 성적 권력으로 극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¹⁾ 위안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위협, 구타, 폭행, 살해에까지 이르는 야만적인 강간은 “황군의 위엄을 손상시키지 않기”⁶²⁾ 위해 국가에서 만들어 준 합법적 공간 위안소에서 일본 군인의 우월성과 권력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했다.

위안소의 규정 및 관리 시스템에도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배타성과 민족 차별의 문제가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일본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나타나는 여성 폄하, 민족 차별의 문제가 응축되어 나타난 것이 위안소 규정과 규율이었다. 위안소의 규정에는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의 뚜렷한 위계와 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⁶³⁾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외적으로는 모든 식민지 백성이 천황의 신민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조선인 ‘위안부’는 위안소에서 차별과 무시를 당해야 했다.

둘째로, 위안소의 시스템은 천황을 위해 모든 것이 도구화되고, 정당화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투영하고 있다. 위안소 강간 시스템은 황군에게 가해진 모든 중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폭발적인 충동을 국가가 마련해 준 합법적인 강간소에서 폭력적으로 마음껏 발산하게 했다. 이러한 위안소의 비인류적인 행위가 일본군이 가는 곳마다 군의 오락시설로 정부와 군의 정책으로 고도한 통제 속에 철저히 이루어진 사실은 오직 ‘대동아공영권 구축’이라고 하는 천황의 성전을 위해 모든 것이 도구화될 수 있는 군국주의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안부’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황군

61) 안연선(2003) 성노예와 병사만들기 삼인 pp.242-244

62) 陸密第1955号「支那事變の経験より觀たる軍紀振作対策」
<https://www.jacar.archives.go.jp/das/image/C15120129000>

63) 미네기시 겐타로, 박옥순 역(2001) 천황의 군대와 성노예 당대 pp.60-61

을 향한 천황의 선물로 여겨졌고, 이를 환기시키기 위해 황군에게 지급되었던 삭구(곤둑)에는 ‘돌격일번(突 一番)’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위안소의 대다수를 차지한 조선인 ‘위안부’들은 병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배설물 처리의 도구로서, 이들의 폭행과 구타를 통해 분노와 불만, 죽음에 대한 불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당했다.

또한 천황을 위해 모든 것이 수단화, 도구화된 비인륜적인 성격은 조선인 ‘위안부’의 위안소의 생활과 종전 후 귀환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조선인 ‘위안부’는 위안소에서 조선의 언어, 이름, 의복 등 조선의 문화를 금지, 부정당했을 뿐 아니라, 매일 신민서사를 암송하고,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내용의 군가를 부르면서 일본에 충성할 것을 맹세해야 했다. 일본인의 이름으로 개명당하고, 천황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하며 성노예로서의 삶을 강요당해야 했던 조선인 ‘위안부’들은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구축한 위계질서 최하위에서 고통받으면서 언제든지 폐기처분당할 수 있는 도구로서 취급받았다. 언제든지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활용하고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취급된 조선인 ‘위안부’들의 모습은 종전 후 귀환 과정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일본은 패전 후 퇴각하면서 위안부들을 집단적으로 잔인하게 죽이거나 산속이나 밀림 등지에 방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⁶⁴⁾ 이들은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구축한 군국주의 식민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천황을 위한 전쟁을 위해 소비된 후 폐기처분당한 소모품에 불과했다.

4. 나가기

그간 조선인 ‘위안부’의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억에 대한 공격을 위시하여, 일본의 극우단체나 연구자들에게 끊임없는 역사왜곡의 소재로 소비되어 왔다. 지금도 진행 중인 역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적 진실은 유린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당시 일본제국이 구축한 천황제 이데올로기 사회 속에서 조명

64) 김경일 외(2017) 상계서 pp.290-295

해 보았을 때, 왜 유독 조선인 ‘위안부’ 피해가 극심했는지, 왜 조선인 ‘위안부’에게만 공권력에 의한 강제가 있었는지,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하는 의혹과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시정 및 교육방침 및 조선 지배 정책의 본질은 오직 천황을 위해 살고 죽는 천황의 신민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철저한 황민화 사상교육과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통해 조선을 병참기지화하고, 조선인을 천황의 국책인 대동아전쟁에 협력하는 자들로 도구화하였다. 또한 조선의 여성은 천황제 이데올로기 하 가장 낮은 위계에 속한 자로서 용이하게 성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일본의 여성이 총후부인이자 천황의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면, 한국의 여성은 전쟁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성적 희생을 감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조선인 ‘위안부’ 정책은 이처럼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철저하게 군과 조선총독부 및 내무성과 경찰이 협력하여 설계 추진한 국가정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 ‘위안부’ 정책에 내포된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은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천황제 이데올로기 하 가장 낮은 위계에 속했던 식민 조선의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 일본군 위안소에서 가혹한 인권유린을 당해야 했다. 이들은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구축한 식민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천황을 위한 전쟁을 위해 소비된 후 폐기처분당한 도구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선인 ‘위안부’ 문제는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 속에 배태 되어있는 일본 우월주의와 타민족 멸시, 차별과 배제, 천황을 위한 도구화 등 전시기 군국주의 하 강화되었던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민낯을 보여주면서, 강제동원을 비롯한 잔혹한 인권유린의 은폐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参考文献>

- 강정숙(2018) 『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性 究 96 p.57
 강태웅(2013) 『우생학과 일본인의 표상 1920-40년대 일본우생학의 전개와 특성』 일본학연구 38 p.38
 김정일 외(2017) 동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66

- 김미정(2019) 『일제강점기 조선여성에 대한 노동력 동원 양상: 1937~1945년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2(3) p.35
- 김병현(2021) 30년간의 위안부 왜곡, 빨간 수요일 미러사 p.57
- 권숙인(2014)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화류계 여성 한 게이샤 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본 주변부 여성 식민자』 사회와역사 103 pp.153-192
- _____ (2018) 『식민지 여자·제국의 주부·군국의어머니』 일본비평 (18) p.252
- 박유미(2013) 『‘군국의 어머니’ 담론 연구』 일본문화연구 45 pp.153-172
- 박진우(2007)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식민지조선 1910~20년대를 중심으로』 일본사연구 26 pp.193-194
- _____ (2015) 『천황제와 일본 군국주의』 황해문화 89 pp.160-164
- 신용하(2020) 일제의 한국민족말살·황국신민화 정책의 진실 문화과지성사 p.134
- 소지량·진려비(2018) 『중국 금화 지역의 일본군 위안소와 조선인 위안부: 華鷄林會會則及名簿 분석』 한국학연구 제49집 p.491
- 안연선(2003) 성노예와 병사만들기 삼인 pp.242-244
- 안태윤(2003) 『일제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 한국여성학 19(3) p.108
- 오일환 외 편저 (2022) 전시동원 기구와 제도 1 총동원체제 관련 주요 법령 및 각의 결정 등 동북아역사재단 pp.270-280
- 유지아(2019) 『일본 메이지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여성』 한일관계사연구 63 pp.263-293
- 이인화 (2023) 『근대 일본 국민도덕으로서의 교육직어의 의미와 현재 일본에서의 교재 사용 논의 칙어연의 및 일본 학계의 성명문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69 pp.99-100
- 임경택(2005) 『일본가족의 근대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형성과 가족』 일본사상 9 p.131
-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편(2022) 일본 국회의회의록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1948~199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p.53
- 일제침탈사편찬위원회(2021) 『여성과 아동동원』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동북아역사재단 pp.472-476
- 장미화(2007)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여성동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박사학위논문 p.179
- 한혜인(2013) 『총동원체제와 직업소개령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제국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차별적 제도운영을 중심으로』 사람 46 pp.371-413
-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1997)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 현대정치외교의 사상과 행동 p.56-59
- 미네기시겐타로, 박옥순역(2001) 천황의 군대와 성노예 당대 pp.60-61, pp.136-137
-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 편, 김영원 외 역(2014)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휴머니스트 p.54
- 하중문(2023) 진중일지로 본 일본군 위안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다 휴머니스트 p.9

- 호사카유지(2018) 일본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 1 황금알 p.89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2018)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3 한울
金一勉(1976)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三一書房 pp.8-9, p.18
- 内務大臣官房文(1937) 「母子保護法案に就て」 内務時報 2卷1号
- 堀川祐里(2019) 「戦時期における救貧対策としての母子保護法 子どもへの育成に対する期待と稼働労働に対する期待の二重性を中心に」 経済学論纂 59 p.341
- 水野直樹 編(1998) 戦時期 植民地統治資料 第7卷 柏書房 pp.178-180
- 文部省社会教育局(1942) 戦時家庭教育指導要項 家庭教育指導叢書 第1輯
- 朝鮮總督府編(1938) 「内鮮一體ノ強化徹底ニ関スル件」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編 (1940) 昭和15年勞務資源調査に関する件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編(1941) 「極秘 鮮一體ノ理念及其ノ具現方策要綱」 朝鮮總督府
- 山田孝雄 (1937) 國體の本義 宝文館
- Nira Yuval-Davis(1993) “Gender and N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6, No 4.
pp.621-632
- Gay J. McDougall (1998)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Final report submitted by Special Rapporteur
- <軍隊教育令> <https://www.jacar.archives.go.jp/das/image/C0100713830> (검색일: 2023.12.03)
- <大日本帝国憲法> <https://www.ndl.go.jp/constitution/etc/j02.html> (검색일: 2023.11.24)
- <大蔵省印刷局國民優生法> <https://dl.ndl.go.jp/info:ndljp/pid/2960490/2> (검색일: 2023.12.03)
- <國體の本義> <https://dl.ndl.go.jp/pid/1233161/1/7> (검색일: 2023.11.24)
- 陸密第1955号 <支那事變の経験より觀たる軍紀振作対策>
<https://www.jacar.archives.go.jp/das/image/C15120129000> (검색일: 2023.12.07)
- <軍慰安所従業婦等募集ニ關スル件> 軍省兵務課通牒
<https://www.archive814.or.kr/record/recordDetailView.do?recordId=197> (검색일: 2023.12.03)
- <人口政策確立要綱ニ關スル件> <https://www.digital.archives.go.jp/img/pdf/632364> (검색일: 2023.12.07)
- <人口政策確立要綱> 14144606.pdf(ipss.go.jp) (검색일: 2023.12.07)

접수일: 2024년 1월 4일

심사완료: 2024년 1월 22일

게재결정: 2024년 1월 24일

<Abstract>

The Modern Emperor Ideology and the Historical Particularity of the Korean Comfort Women Policy

This study examined the specificity of the Korean “comfort women” policy, which is organically linked to the modern Japanese emperor ideology. It also historically examines the actual damage caused by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e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 “comfort women.”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emperor’s ideology and the strategies and policies that Japan implemented to rule Korea through the Korean Governorate, we analyzed primary sources such as documents, decrees, and notices from the Japanese military and administration, including from the governor general of Korea, considering the organic connection between the Korean “comfort women” policy and the modern emperor ideology.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Korean “comfort women” policy was a coercive state policy,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which involved the Japanese military, the Korean governorate, and the executive branch, and that the Japanese forcibly mobilized Korean women at the bottom of the social hierarchy as instruments of sexual exploitation. The issue of Korean “comfort women” is related to the historical facts of Japanese supremacism, contempt for other peoples,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nstrumentalization of human beings, and brutal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forced labor, which are inherent in the modern emperor ideology.